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베트남우리은행

2. 조치일 : 2024. 4. 25.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5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업무 및 사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베트남우리은행은 여신감리 결과 조치사항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에 신용조사(평가) 업무와 관련한 기일 도래 알림 기능이 없어 여신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베트남우리은행은 여신감리 결과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조사(평가) 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평가 체계 미흡

베트남우리은행 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법인장)이 단독으로 반기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장(법인장)의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은행의 재무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며, 준법감시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베트남우리은행은 모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담당자의 독립성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권자를 명확히 하는 등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단독으로 또는 은행장(법인장)과 공동으로 베트남우리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담당자를 평가(매트릭스 조직의 평가체계를 도입)

(3) 사원총회(이사회) 운영 미흡

사원총회는 베트남우리은행 내규 「사원총회 규정」에 따라 주주(우리은행 단일주주)가 이사진을 임명하고, 분기마다 O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나,

이사진(O명)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내규에는 O년 이내로만 명시)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교체된 O명의 이사진 중 O명의 임기가 O년 정도였고, 이사진 교체도 한 번에 O명씩 이루어지고 있어 사원총회 운영의 연속성·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사진 O명 중 O명이 모은행 소속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사원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사원총회 의사록도 안건에 대한 거수 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사원총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의 최소 임기를 보장(예: 2년 이상)하고 구성원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거주 이사진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사원총회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의심거래 추출기준 및 의심거래 보고 체계 강화

베트남우리은행은 내규「국외영업점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하여야 하고, 국내법령과 현지법령상 기준이 상이할 경우 이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검사대상기간중 베트남우리은행은행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추출(STR Alert)한 249,471건 중 의심거래보고(STR)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추출기준(STR Alert Rule)을 검증하여 개선·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Alert Rule)이 OO개로 구성되어 베트남우리은행 모은행 기준(OOO개) 대비 크게 미흡한 상황임에도 본점 기준과의 비교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베트남우리은행은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본점 기준과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추출기준의 추가·변경시 이를 활용한 의심거래보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수신 기반 다변화 방안 마련

은행의 자금조달원이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조달처의 자금 회수 여부에 따라 은행의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자금 회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의 생존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

베트남우리은행은 수신 기반이 일부 한국계 기업의 거액예금에 편중되어 있어 동 기업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거액예금이 인출될 때마다 유동성 위기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베트남우리은행은 거액예금 인출 요구에 대하여 모은행 차입 및 특판예금 조달 등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은 모은행의 자금사정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자금조달원 편중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 및 소매예금 거래처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신기반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개선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은행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이므로, 은행의 영업특성 및 취약점을 감안하여 시나리오와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거액 예수금의 이탈에 대비하여 수차례 현안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유동성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에는 동 예수금 이탈로 인한 영향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제를 충족한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은 O영업일간 매일 일정한 비율로 예수금이 인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일시에 거액예금이 인출되는 현지법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거액예금 이탈로 인한 유동성리스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베트남 동화(VND) 및 美달러화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이를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영업점 출납업무 관련 내부통제 개선

은행은 내규 「시재 및 유가증권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객과의 현금거래는 은행 시재금고를 통하여 실행하여야 하나,

영업점의 텔러직원이 고객과의 현금거래시 시재금고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현금을 고객에게 선지급한 후 시재금고의 현금을 수취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현금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은행은 모출납직원 및 수신책임자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업무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거래 관련 「시재 및 유가증권 업무매뉴얼」 숙지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모출납직원 또는 수신책임자가 현금수송업무 등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직상위자의 업무 지원(백업), 본점 직원 지원 등을 통해 업무공백을 차단